2024년 04월 29일 08시 24분

자동차등록증재교부

-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

자동차등록증재교부

구비서류

-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: 신분증
-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(소유자 도장 날인), 소유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- 법인 신청시 : 위임장(법인인감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신분증(신청인)

과태료

-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할 때 5만원 과태료

수수료

- 증지 700원

관련법규

-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
-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